

2026년도 R&D기획 지원 신청기업 모집(2차)

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남도, (재)경남테크노파크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방향 설정과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「R&D기획 지원사업」을 공고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

2026년 8월 6일
(재)경남테크노파크 원장

1

사업개요

- (사업목적) 도내 연구개발 수행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맞춤형 기획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방향을 구체화하고,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며, 기업의 자생적 R&D 추진 역량 강화
- (지원규모) 2개사 내외 / 기업당 4백만원 이내 지원(기업부담금 10% 이상)
- (지원대상) 본사를 경남에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(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기준)
- (지원내용) 2026년 정부부처 R&D 공모과제 신청을 위한 기술개발 기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 전 과정에 대한 기업 지원

지원 구분	지원내용
전문가 활용	2026년 정부부처 R&D 공모과제 신청을 위한 전문가 자문 ① 기업의 기술개발 아이템 발굴 및 R&D 추진 전략 수립 ② 기술·시장·사업화 타당성 조사 및 기술로드맵(Technology Roadmap) 작성 지원 ③ 정부부처 R&D 과제유형 및 지원사업 매칭 자문 ④ 과제 제안서(사업계획서) 작성 및 발표자료(PT) 구성 자문 ⑤ 특허 분석 및 회피방안 수립 지원 ⑥ 과제 수행 시 유의사항, 평가기준 대응방안 등 실무 중심 컨설팅 등

- (지원기간) 협약일로부터 ~ 2026. 11. 30.
- (신청방식) 기업을 주관으로 하되, 기업이 희망하는 전문가를 매칭하여 신청
 - 전문가 신청 시, 전문가 자격기준* 충족 여부 확인 필수[참고]

○ (지원조건) 지원기간(협약일~26. 11. 30.) 내 정부R&D과제 신청을 완료해야 함

- 기업이 우선 비용을 집행하고, 제출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사후 정산함

※ 정부부처 R&D사업 신청 시 주관기관으로 신청해야 하며, 공공연구기관 또는 타 기업과 공동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할 경우 세부 주관기관으로의 참여까지는 인정함
※ 기관 컨설팅(코칭), 바우처(시제품, 시험분석, 인증지원 등), 특허분석과제(IP나라, 지재권분쟁, IP R&D 등) 등의 비R&D성 과제 지원은 불인정
※ 자금(지원금)용도에 따른 R&D과제, 비R&D과제 구분
- R & D: 연구원 인건비, 연구 재료비, 시약 구입비 등(디딤돌, 전략기술개발사업 등)
- 비R&D: 홍보비, 시제품비, 인증비, 장비사용료 등(바우처, 전시회, 마케팅사업 등)

2 평가방법 및 기준

○ (추진일정)

☞ 평가, 선정, 협약 일정 등 세부사항은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사업공고	신청자격 검토	(필요시)현장확인	선정평가	선정결과 통보
경남테크노파크	경남테크노파크	경남테크노파크	평가위원회	경남테크노파크
'26. 8. 6. ~ 8. 14.	~ '26. 8. 18.	-	'26. 8. 20.(예정)	-

지원금 청구	결과보고 및 평가	과제수행	협약체결	이의신청
선정기업	경남테크노파크	기업, 전문가	경남테크노파크	경남테크노파크
'26. 12월 중	~ '26. 11. 30.	'26. 9월 초~	'26. 9월 초	~ '26. 8. 28.(예정)

○ (평가단계) 요건검토 및 현장확인(필요시) → 선정평가

○ (평가방법)

- 접수과제의 제출서류, 신청 자격 등에 대한 평가 시행

○ (평가항목)

- 요건검토: 지원자격 충족 여부 검토(지원제외대상 여부 등)
- 현장확인(필요시): 사업신청서 및 내용의 사실 여부 등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
- 선정평가: 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항목별 점수 산출

<평가 항목>

사업신청서	평가항목	평가지표
신청기업 현황 (10점)	R&D수행역량	■ 연구인프라 구축 수준과 수행가능 역량의 우수성
기술개발 필요성 및 추진방향 (40점)	기술개발 추진 배경 및 필요 타당성	■ 산업·시장 환경 변화와 기술적 한계 인식에 기반한 기술개발 추진의 타당성
	기술·제품의 차별성	■ 개발 기술(또는 제품)의 독창성과 경쟁 우위성
	기술개발 목표 수준의 적정성	■ 기술개발 목표의 현실성과 추진내용의 타당성
	사업화 전략의 구체성	■ 기술개발 완료 후 사업화 및 시장진입 전략의 구 체성과 실현가능성
컨설팅 추진계획 (40점)	과제 기획의 타당성	■ 전문가 활용분야의 적합성 및 역할분담의 명확성
	추진일정 및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	■ 과제 추진일정 및 사업비 구성의 합리성과 실현가능성
	지원사업 이해도	■ 자사 기술·제품과 기획 예정 과제 간 적합성 ■ 기획 예정인 정부 R&D 과제의 이해도
	리스크 관리방안	■ 예상 가능한 리스크 인식에 대한 인지 수준 및 대 응계획의 적정성
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(10점)	기대성과 및 활용계획의 실현가능성	■ 정성적·정량적 기대성과의 구체성과 현실성 ■ 기획성과의 후속활용 방안 명확성

- (평가방식) 평가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기업을
지원대상으로 선정
 - 단, 70점 이상인 경우가 다수일 경우 최고득점 순으로 지원하며, 차순
위 기업을 후보기업으로 지정함
 - 지원기업이 과제를 포기할 경우, 후보기업에서 지원기업 선정할 수 있음
 - 최종 지원 금액과 선정 과제 수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- (공고 및 접수기간) 2026. 8. 6.(목) ~ 2026. 8. 14.(금), 18:00까지
- (접수방법) (재)경남테크노파크 누리집 회원가입 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

<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>

- ☞ 사업신청은 반드시 경남테크노파크 누리집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
- ☞ 접수 마감일에는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~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
- ☞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·접수에 유의하기 바람
* 18시 이후, 신청 및 제출,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
- ☞ 사업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:00까지만 가능
- ☞ 경남TP 누리집 회원가입 필요, 원클릭 시스템 이용시 공인인증서 필요함
- ☞ 경남TP 회원정보 변동사항 수정 필수(회원정보 오기재로 미응답시 평가진행불가)

○ (제출서류)

제출서류 목록		제출부수
①	[서식 1] 사업계획서	1부
②	[서식 2]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	1부
③	[서식 3]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1부
④	[서식 4] 청렴·성실의무이행·중복지원방지 서약서	1부
⑤	[서식 5] 전문가 이력서	1부
⑥	[서식 6]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·신청 내역	1부
⑦	사업자등록증	1부
⑧	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	1부
⑨	최근 결산연도('24년) 재무제표(국세청 발급)	1부
⑩	(해당시)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*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(KOITA) 발급 인정서만 인정	1부

- (문의처) 기업지원단 김현미 연구원(055-259-3614, kkkhm@gntp.or.kr)

참고**전문가 자격기준**

○ 기본자격

구분	자격사항
대학	▶ 전임강사 이상
국·공립 연구기관	▶ 5급 이상 직원
정부출연 연구기관	▶ 해당 연구기관의 “선임” 직급 이상
기업체	▶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5년 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
	▶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
	▶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
	▶ 고교졸업 후 동일 기술 분야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 소유자
전문직분야	▶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

○ 제척사항

※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가로 참여할 수 없음

1.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2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3.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자
4. 신청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
(예)신청기업의 소속 임직원, 법인 이사·감사 등 임원, 신청기업의 자회사·계열사 소속 직원, 또는 「국세기본법」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
5. 평가위원회에서 전문가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

※ 신청 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,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, 신청 이후라도 최종 협약 이전에 신청 제한 또는 지원 제외 사유가 발생·발견되는 경우 평가 제외 또는 지원취소 할 수 있음

☐ 주관기업 · 공동개발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

- 주관기업 및 공동 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 자격에 맞지 않거나,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, 개발 특성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
☐ 기 개발 및 기 지원 여부 검토

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및 지원된 경우
-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 내용과 유사한 경우
- 신청기업의 기 생산·판매·서비스 중인 제품·서비스이거나 동 제품·서비스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
- 신청과제가 신제품,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·서비스의 고도화(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)가 아닌 단순한 연구성 과제인 경우

☐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

- 주관기업, 주관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, 공동개발기관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, 성과실적 입력,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
※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

- 최종 제출결과물이 R&D성격이 아닌 과제에 지원한 경우 지원이 불인정 될 수 있음

☐ 참여제한 여부

- 주관기관,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 책임자, 공동 개발기관, 공동 개발기관 공동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
- 협약 시작일부터 협약종료일까지 주관기관과 기획기관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는 참여 인력을 포함한 경우

□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

※ 아래 자세한 사항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관리지침에 따름

- 신청기업,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기업의 부도(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)
 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- ※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
 - ※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
 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(채불사업자포함)로 등록된 경우
 - ※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
 - ※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
 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- ※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
 - 부채비율이 1,000%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
 - ※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,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에 따른 “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(채권은행 협약)”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, 시설투자(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·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,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)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·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, 국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기업,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
-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
□ 기타사항

- 사업에 참여하는 자(신청기업, 대표이사, 과제책임자, 전문가 등)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-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 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
-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및 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름
- 신청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,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, 선정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
- 신청서류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 착오, 위·변조 및 누락, 지정 양식 이외 양식 사용 등의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, 이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 기업의 책임으로 함